

인천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가단661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숙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규, 김진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2771호(이하 ‘이 사건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변제자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0. 2. 11.부터 2010. 11. 18.까지 사이에 합계 5억 5,91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276,335,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예비적으로는 167,835,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2016. 10. 2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2. 11.부터 2010. 11. 18.까지의 대여금은 합계 5억 2,910만 원(2010. 2. 11.자 1억 원, 2010. 3. 25.자 2억 원, 2010. 5. 31.자 1억 4,910만 원, 2010. 6. 30.자 3,000만 원, 2010. 11. 18.자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게 5억 1,677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변제금은 대여금 원금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각 충당되어,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중 남은 원금 1,233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4. 29.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남은 손해 원금 129,824,881원과 이에 대한 2015. 10. 16.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1,000만 원을 C을 통해 변제하고 C이 유체동산 압류 및 강제경매 방식으로 일부 회수하여 합계 1,233만 원이 추가로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C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차용금이 5,96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 2,000만 원은 원고가 직접 C에게 변제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음으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선행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C은 ‘2009. 7.부터 2010. 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5,96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갚지 않아 2011. 9. 16.에 이자를 포함하여 9,500만 원을 2011. 10. 7.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로도 원고가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0. 25. 1억 2,600만 원의 차용증과 1억 3,500만 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증인에게 갚을 돈도 없고, 이를 원고가 대신 갚아주기로 하여 위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원고의 위 추가변제 주장이나 상계 항변은 C의 증언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배척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사건 진행 중 C을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C과 피고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2009. 7. 1.부터 2010. 1. 7.까지 C이 송금한 5,960만 원은 피고가 C에게 입금한 돈을 C이 그대로 원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돈으로 C이 원고에게 5,9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5. 31.자 대여금 중 3,000만 원은 피고가 C으로부터 빌려서 원고에게 빌려준 돈인데 한 달 후 피고가 C에게 이미 변제하였고, 그 후 2010. 11. 29. 피고가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C에게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변제를 독촉 내지 강제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C에게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를 대신 갚으라고 하여 2011. 9. 16.자로 9,500만 원의 차용증을, 그 후 2012. 10. 25.자로 1억 2,600만 원의 차용증 및 1억 3,5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C이 원고에게 5,96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차용증과 약속어음이 작성되었으며, C이 피고로부터 받을 돈이 없다는 진술은 허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결과 C은 위증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2016. 12. 27.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26350호로 C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나210285호 사건)하였고, 위 항소심 사건 계속 중에 위와 같이 C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C의 위증 사건 결과를 항소심 법원에 현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심의 변론 기일 지정 전인 2017. 2. 8. 스스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선행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 후 2017. 8. 25.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7405호로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원리금 합계 167,392,238원을 변제공탁하여 피고가 그 즈음 이를 수령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인정된 대여금 합계 5억 2,910만 원과 관련하여 2014년에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사기죄로 1심(인천지방법원 2014고단6882호 사건)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5노3612호 사건)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판결을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원고의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5도20341호 사건)되어 2016. 3. 10.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0. 1. 7.까지 C을 통해 빌려 준 5,960만 원과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은 추가 대여금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2,870만 원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를 사기혐의로 추가 고소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 8. 31.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그 후 원고는 피고를 무고, 위증교사,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피고가 주장한 대여금 중 8,000만 원은 피고가 C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한 것이므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대여금에 포함시키고 C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법원을 속여 결국 위 8,000만 원이 포함된 총 5억 2,91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인정되었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변제금을 충당한 결과 미변제금액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선행판결이 선고되었다. 결국 원고가 변제공탁하여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선행판결의 원리금 중 8,000만 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또는 법원을 기망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된 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 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인정된 것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일정한 기간 내에(민사소송법 제456조, 다만 제457조의 예외가 있다)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또한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거나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선행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C의 위증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변론에 현출하는 등으로 다투지 아니한 채 스스로 항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을 확정시켰고, 재심 제기 기간도 도과되어 결국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인바, 이제 와서 원고가 공탁한 판결원리금을 피고가 수령한 것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구하는 것은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대여금 채권에 피고가 C에게 양도한 8,000만 원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피고 또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¹⁾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는 2010. 5. 31.자 차용금 3,000만 원(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2010. 5. 31.자 1억 4,910만 원 중 일부) 및 2010. 11. 29.자 차용금 5,000만 원의 합계 8,000만 원인데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가 2010. 6. 30.에 이미 C에게 변제하였음에도 원고의 채무 변제를 독려 내지 강제하기 위하여 마치 C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중국적으로 피고가 이를 수령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점, 원고가 2020. 1.경 피고에게 변제한 8,000만 원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2009. 7. 1.부터 2010. 1. 7.까지 사이에 C을 통해 원고에게 입금된 합계 5,96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가 C에게 양도한 8,000만 원의 변제조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기 전 C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재 원고의 유체동산을 압류(2013. 6. 27.)한 사실은 있으나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로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던 점, C은 이미 사망(2017. 8. 28.)하였고 원고가 C에게 위 8,000만 원 중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피고가 C에게 양도한 채권의 일부를 포함하여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2)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대로 피고의 행위가 소송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늦어도 C이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2016. 12. 27.경에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추가 변제 및 상계 항변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 및 C의 증언이 사실과 다름에도 C의 위증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선행판결이 선고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2017. 8. 25.경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5. 2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

1) 2022. 10. 5.자 준비서면